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81

발의연월일: 2021. 2. 18.

발 의 자:김민철·고용진·김경협

김철민 · 민형배 · 박재호

박 정・서영교・유정주

이규민 · 이병훈 · 이수진

이용호 · 임오경 · 장철민

한병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월 12일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데,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각급 지방의회보다 상위의의회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국회법」과 상당한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체계상의 과제가 있음.

법률용어 역시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바, 예를들어, '부의(附議)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치다'로서 일반적으로는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부의'의 주체가 의장, 위원장 및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정부가 주체가 될 때에는 '제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와 같이주체에 따른 구분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78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중 "부의"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부의할 안건은"을 "제출할 안건은"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부의할 때에는"을 "제출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5조(<u>부의</u> 안건의 공고) 지방자	제55조(<u>제출</u> 안건의 공고)
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u>부</u>	<u>제</u>
<u>의할 안건은</u> 지방자치단체의	출할 안건은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	
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u>부</u>	<u>제</u>
<u>의할 때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	<u>출할 때에는</u>
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
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	료 등의 제출) ①
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u>발의</u>	<u>제출</u>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u>.</u>